

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함

2. 주요내용

-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정함
(안 제2조)

3. 조례안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- 라. 기 타 : 해당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할 것을 청구한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에서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

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"19세 이상의 주민"이라 한다)은 시·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권 순 서
	담 당	박 주 영
	담 당 자	권 순 모 (480-6762)